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95호 2019. 11. 21.



회 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조 례

○ 제2410호 청양군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2411호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12호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13호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14호 청양군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15호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2416호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2417호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418호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419호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20호 (재)청양군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21호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22호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23호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24호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25호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426호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 제1246호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247호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248호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 제311호 청양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 규

○ 제312호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0호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청양군 및 소속 행정기관, 청양군이「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군수는 청양군 및 소속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제7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지원대상의 제외)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

항에 따른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발굴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1호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를 “호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인의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을 “2명의 위원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규정에 의거”를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2호의 2인중”을 “제1항제2호의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의원”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양군의회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으로,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을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등)”을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을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 중 “행하게 하기”를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2호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의"를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을 말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수당”을 “명예수당”으로, “소지하고”를 “가지고”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만5천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을 “읍장·면장에게 신청하고, 읍장·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급여부”를 “지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당”을 각각 “명예수당”으로, 같은 항 중 “지급중지”를 “지급 중지”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부당지급된”을 “부당 지급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급중지”를 “지급 중지”로, “명예수당에 대하여는”을 “명예수당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기록 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3호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양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7만5천원”을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20만원 지급

제5조제1항 및 제5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급신청”을 “지급 신청”으로, “적격여부”를 “적격 여부”로,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그전일”을 “그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연령”을 “지급 연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때”를 각각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실한 때”를 “잃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정정사실이 있는 때”를 “정정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여부”를 “환수 여부”로 한다.

제9조 중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를 “수당의 환수”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4호

청양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12개월 이하의”를 “36개월 미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탁) ①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7조 및 제8조의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는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5호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에 따라 국내·국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청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유치”란 수도권 등 다른 시·군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격·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공장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본사·연구소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 또

는 신규투자·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본사·연구소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13. “6차산업”이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사업으로 군내에 단지화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제4조(설치) 국내·국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청양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 및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3.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

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9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국외 투자 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청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투자유치에 필요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미래전략과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업무담당 팀장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국내기업의 투자 지원

제16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수도권 등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이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등
2.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 인원이 15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등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등의 매입금액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 지원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에 대

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제17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 기업이 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고용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장 등
2. 첨단 업종 관련 공장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 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다.

제18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6차산업 등의 특별지원)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3. 부지 면적 100,000㎡ 이상으로서 6차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산업용지에 투자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등

제5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19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

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 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군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22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6장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제25조(책무) ① 군수는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하여 기업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 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 관련 정보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판촉 및 기술개발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국외 판촉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소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소 협력 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화의 촉진)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국내·국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근로자 복지 증진) ①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 보호 등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산업단지 시설 지원) 군수는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기반시설, 관리사무소, 근로자 복지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민간개발 산업단지 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기반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개별입지 공장 지원) 군수는 군에 개별 입지한 공장 또는 하고자 하는 공장의 기반시설을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최고 기업인 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군 최고 기업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최고 기업인 상을 받은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산업시찰 지원

2. 주요 행사 참석 시 우선 예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제1항에 따라 군 최고 기업인 상을 수여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최고 기업인 상의 선정,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및 시상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사후 관리) 군수는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39조(지원한도 및 중복지원 금지) ①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하되, 기업당 최

고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여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 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설립 승인부터 2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는 미달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2조(성과금 지급 등) ① 국내·국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6호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행동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청양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활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 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자문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 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 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하 “피해단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8항제2호 등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서명 또는 인)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table>
<tr><td>단 체 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 colspan="2">○ ○ ○
(휴대전화)</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대표전화</td><td></td></tr>
<tr><td>담 당 자</td><td colspan="2">○ ○ ○
(휴대전화)</td><td>부서명</td><td colspan="2"></td></tr>
<tr><td>인 원</td><td>남 ○○명</td><td>여 ○○명</td><td>총인원</td><td colspan="2">○○명</td></tr>
<tr><td>장 비</td><td>장비명(규격)
○○대</td><td>장비명(규격)
○○대</td><td>장비명(규격)
○○대</td><td colspan="2">장비명(규격)
○○대</td></tr>
<tr><td rowspan="2">지원가능</td><td>남 ○○명</td><td rowspan="2">장비(규격)
○○대</td><td rowspan="2">장비(규격)
○○대</td><td colspan="2" rowspan="2">장비(규격)
○○대</td></tr>
<tr><td>여 ○○명</td></tr>
<tr><td>전문분야</td><td colspan="5">※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td></tr>
<tr><td>활동희망분야</td><td colspan="5">※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td></tr>
<tr><td colspan="6">[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td></tr>
</table>

상기 본 단체는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 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서명 또는 인)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 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흔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청양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사 진
(3×4cm)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 7.7cm ↓

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 (안전관리위원회) ▼ 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 ▼ 확 정 (시장·군수·구청장)
지 급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7호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예술단의 명칭은 청양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하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며, 예술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2. 청양군취타대(이하 “취타대”라 한다): 총감독,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취타대의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을 기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총감독 및 지휘자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4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④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총감독 및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

는 사람을 총감독 및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③ 일반단원은 음악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재위촉)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단원의 전형) 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9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 시킨 사람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12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청양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제13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계획) 부단장은 예술단의 운영 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8호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에 따라 청양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푸드플랜”이란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의 유통 경로를 통해

지역산 농산물을 유통 및 판매하여 농업인에게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5.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6.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 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말한다.

7.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8. “직매장”이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매장에 진열·판매 하는 곳으로 행정, 공공기관 및 조합 등이 운영하는 건물을 말한다.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에 따른다.

제2장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지원과 수요와 공급 불안 농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0억원 범위 내에서 청양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군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1. 지원대상 품목의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

2. 수요와 공급 불안 농산물의 수매, 저장, 유통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수요와 공급 불안 농산물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유통 대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기금 사업계획 및 자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놓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⑤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정 품목의 초과 생산에 따른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기금 사용 한도 초과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사용 한도의 2분의 1까지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농산물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기준가격 지급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6. 품목별 자조금 조성, 사용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공동체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1.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 “농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농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5. 농업유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군 농정자문단 등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과 제10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기준가격 지원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기준가격 지원

제15조(품목결정) ① 기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다.

③ 품목은 매년 선정하되,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④ 납품에 따른 불량제품 및 품질표시 위반된 물량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제16조(지원대상) ① 기준가격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련 유통경로를 통해 출하한 농가로 한정한다.

② 위탁영농 생산물 및 타인이 재배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17조(지원신청)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읍장·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 시 출하증명서를 붙여 차액지원 신청서를 읍장·면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기준가격 결정) ① 기준가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기준가격 고시) 군수는 기준가격을 해마다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차액 지급기준) ①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차액의 지급은 매 분기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다음 분기 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 분기 중의 가격은 기간 중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재원 마련 등) ① 군수는 기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 품목 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3조(재원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24조(환수) ① 군수는 농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 농가는 1년 간 푸드플랜 유통경로의 납품 자격을 박탈하며, 기준가격 보장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기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19호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33조”를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단체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기관, 단체,시설 등에서”를 “기관, 단체 및 시설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 등에서”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산물,「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란"을 "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농산물과"를 "농산물·축산물과"로, "식품으로서"를 "식품으로서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로,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를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친환경(무항생제, 유기)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무항생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산물우수관리"를 "농산물 우수관리"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군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산물·축산물

8. "이외 지역"이란 청양군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된 지역을 말하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9. "지원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 중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지원은”의 “(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를 삭제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단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아동·한부모가정·여성·정신질환자요양·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및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2 등”을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확충”을 “확충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혁신”을 “혁신 및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범

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
2. 일반음식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단체,”를 각각 “단체 및”으로, 같은 항 중 “설비비,”를 “설비비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은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경유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를 “사용 명세를 교육장을 거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입 및 수집, 가공,”을 “구입, 수집, 가공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공지원”을 “생산과 가공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제1호 중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제19조 및 20조에 따른 급식지원센터”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과장”를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지소 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상정안건을 회의개최”를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재)청양군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20호

(재)청양군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심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1.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6조제1호 중 "농·특산물"을 "농산물·특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를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으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체수익사업”을 “자체 수익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내외”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사업”을 “제6조의 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참고자료”를 “참고 자료”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검사하게 할”을 “검사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법 제20조 및”으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대부 할”을 “대부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① 시설물 사용료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21호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하“군수”이”를 “(이하 “군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본문 중 “시설물중”을 “시설물 중”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주차장운영”을 “주차장 운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있고.”를 “있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허가”를 “인가·허가”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동의의 철회)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동의 철회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군수에게 내용 증명서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제2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22호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란 청년 및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서 지원되는 창업지원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6. “창업자”란 창업지원 관련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2.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및 교육 지원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4.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
2.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학교·연구소·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사항
3.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심의 결정사항
4.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일자리·노인·여성·농업창업·청년 등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또는 전문가

2. 일자리 정책 및 창업 관련 분야를 대표한 사람

3. 청년 및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위촉을 해제하고 후임자를 재위촉 한다. 다만,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중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창업・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일자리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통합 또는 필요한 경우 창업센터, 일자리정보센터로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 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센터 운영 등) ① 센터의 장은 입주자의 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방법, 입주절차, 계약, 퇴거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운영·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창업·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창업(창업농 포함)

제10조(창업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창업 등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업 등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대상) 군수는 창업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빈 점포 및 일반시설물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바꾸려는 청년 및 창업자
2. 농업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창업자
3. 서비스업 및 창업 관련 청년 및 창업자

제12조(창업의 발굴·육성)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3. 농업 창업 관련 사업화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육성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13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 제공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 오디션 대회에 따른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14조(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2.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3.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 취업지원

4. 창업지원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취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의 연계지원 사항

2. 청년, 장애인, 여성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행정·재정지원

제16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7조(경영·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관 등은 사업계획 목적 외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9조(보고·검사)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개인 등을 선정하여「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그 밖의 관련 법령 준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는 관계 법령 및「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23호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용역업”을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협의회의”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24호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외에 부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시가적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유재산을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각 호의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3호 후단 및 제6호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한다.

제53조제3호 중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58조 중 “사용도중”을 “사용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25호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치·운영”으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양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청내용을”을 각각 “신청 내용을”로 하며, 같은 호 중 “보건의료원”을 “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를 “군내”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설치·관리 하는”을 “설치·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한다.

3.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조례 제2426호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만6세 이상 만12세”를 “만 6세 이상 만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만13세 이상 만18세”를 “만 13세 이상 만 18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만19세 이상 만64세”를 “만 19세 이상 만 64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만65세”를 “만 65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후단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가내용”을 “허가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

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 이상 경합하는”을 “2명 이상 경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최 또는 주관하는”을 “주최·주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다수인”을 “여러 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비치 관리”를 “비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용료 는”을 “이용료는”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최, 주관하는 경기 또는”을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행사”를 “및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

제12조제4항 중 “청양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만13세 이상 만64세”를 “만 13세 이상 만 64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초과이용료)”를 “(초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초과이용료”를 “초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초과이용시간”을 “초과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귀책”을 “책임이 있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귀책사유”를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전단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단서 중 “안내데스크”를 “안내 데스크”로 한다.

제20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감면 50%란 중 “전입세대”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청양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 신청서

※굵은선 안의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하신 후, 뒷면의 회원서약서를 꼭 읽어 보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신 규
☐ 재등록</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2">☎ :
H.P :</td></tr>
<tr><td rowspan="6">강 좌</td><td rowspan="5">☐ 수영강습</td><td colspan="5">☐ 아쿠아로빅 (13:00~14:00)</td></tr>
<tr><td colspan="5">☐ 종합반 (14:00~15:00) 3개반 초급/중급/상급</td></tr>
<tr><td colspan="5">☐ 실버반 (15:00~16:00) 2개반 초급/중상급</td></tr>
<tr><td colspan="5">☐ 어린이반 (16:00~17:00) 3개반 초급/중급/상급</td></tr>
<tr><td colspan="5">☐ 성인반 (19:00~20:00 / 20:00~21:00) 3개반 초급/중급/상급</td></tr>
<tr><td colspan="2">☐ 자유수영</td><td>개 월</td><td colspan="3">☐ 1개월 ☐ 3개월(10%)
☐ 6개월(15%) ☐ 12개월(20%)</td></tr>
<tr><td rowspan="6">구 분</td><td colspan="2" rowspan="6">☐ 어르신(만 65세 이상)
☐ 성인(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어린이(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td><td rowspan="6">감 면</td><td rowspan="4">50%</td><td>☐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td></tr>
<tr><td>☐ 다문화가족 ☐ 다자녀</td></tr>
<tr><td>☐ 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정</td></tr>
<tr><td>☐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td></tr>
<tr><td>20%</td><td>☐ 전입대학생</td></tr>
<tr><td>10%</td><td>☐ 가임여성</td></tr>
</table>

※중복감면의 경우, 할인율이 더 높은 감면사항만 적용

• 사물함 사용신청서

신 청 구 분	☐ 신 규	☐ 연 장	☐ 사물함 변경
사물함 번호		사 용 기 간	개월(20 . . .부터 . .까지)
사물함 사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사물함을 반납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사용신청 및 연장 신청은 프로그램을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으로, 프로그램 등록기간 내에서 월단위로 사물함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날짜에 반납을 하지 않으시면 사물함 안의 물건을 임의 수거하여 10일간 보관 후 폐기처분되며, 사물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배정은 선착순 신청자 우선 배정되며, 사물함 수량 관계로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잠금장치(비밀번호)는 개인이 설정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 물품의 분실 및 도난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사물함 청소를 위하여 사전 공지 후 사물함을 일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는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월 4,000원입니다.

(뒷면)

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청양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음주자, 심약자, 피부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수강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일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회원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재수강 및 센터 이용 안내를 위해 휴대폰 SMS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상기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본 자료는 1년간 보관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월 회원가입이 될 수 없음)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서약인(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규칙 제1246호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때”를 “경우”로,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4조 중 “제11조와 제12조”를 “제17조와 제18조”로, “제13조부터 제16조”를 “제19조부터 제22조”로, “충청남도 외”를 “수도권 등 다른 시·군”으로 한다.

제5조 중 “군수는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년도”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년도 1월말 까지”를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최고기업인 상)”을 “(최고 기업인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업인상”을 “제37조에 따른 최

고 기업인 상”으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고기업인상”을 “최고 기업인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고기업인상”을 “최고 기업인 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실적증거자료”를 “실적 증거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최고기업인상”을 “최고 기업인 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고용창출 :”을 “고용창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출신장 :”을 “매출신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활용 :”을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발전공헌 :”을 “지역발전공헌:”으로, “기여한”을 “이바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분야 :”를 “분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최고기업인상”을 각각 “최고 기업인 상”으로, 같은 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지급기준”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1호의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규칙 제1247호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경영업무관련 팀장, 공공급식팀장, 기획생산출하자조직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관계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농업인단체 및 푸드플랜 출하자 관계자

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

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 기준가격 지원 대상 농산물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추천

2.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 확정

3. 품목별 기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자료 추천

4.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5. 조사가 불분명한 품목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군수가 홍보하고 결정하여 공지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읍장·면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가격 차액 청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및 판매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20 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사업 신청서</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전자우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5">거주지 :</td></tr>
<tr><td colspan="5">경작지 :</td></tr>
<tr><td rowspan="2">총 재배면적</td><td colspan="2">총 ㎡</td><td>대표생산품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 논( ) 과수( ) 하우스( )</td></tr>
<tr><td>인증현황</td><td colspan="5"></td></tr>
<tr><td>출하실적</td><td colspan="5">품목수 ( ) 출하금액 ( )원</td></tr>
<tr><td rowspan="7">사업신청
내용
(품목 및
예상계획량)</td><td>품목명</td><td>예상계획량</td><td>품목명</td><td colspan="2">예상계획량</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청 양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td></tr>
</table>

위 신청자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도의 대상농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읍·면 장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법인명과 대표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법인명,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1. 사업명 : 20　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업

2. 품목별 생산계획

구 분	총 평 (임차포함)			
	품 목 명	재배기간 및 출하기간	면적 (㎡)	판매현황
노 지				
시 설				
기 타				

3. 사업기간 : 20　.　.　.　~　20　.　.　.

[별지 제2호서식]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업 차액 청구서>

1. 사업명 : 20　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사업
2. 신청자
   ○ 신 청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3. 판매 및 차액 청구 내역

품 목 명	판매내역		차액내역		
	판매물량 (kg)	판매금액 (원)	기준가격 단가(원/kg)	시장가격 (원/kg)	차액금액 (원/kg)
합계					

※ 판매 증빙자료 사본 첨부(학교급식센터, 직매장 등)

4. 차액 청구액 금　　원(금　　원)

※ 은행 및 지급 계좌번호 :

위와 같이 20　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판매 증빙 자료

20　년　　월　　일

청구자 :　　(인)

위 청구자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도의 대상농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읍·면 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규칙 제1248호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식재료 공급자”는”을 ““식재료 공급자”란”으로, “우수농·수·축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을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식재료

를 공급하는 개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농업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축산물"을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급식에"를 "학교급식은"으로, "농·수·축산물"을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 "지원"을 "지원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중·석식에 한하며, 청양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식·중식·석식에 한정하며,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급식경비"를 "급식 경비"로, "이하"교육장""을 "이하 "교육장""으로,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친환경 농산물은 현물 지원을 우선하되,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원 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를 "제15조"로, "별지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 익년도"를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청양군홈페이지”를 “청양군 홈페이지”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보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구매”를 “구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축산물이 없거나 생산여건”을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 없거나 생산 여건”으로, “농·수·축산물의”를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을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급함”으로, “제출”을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을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급 받”으로,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한 공급확인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을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도·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와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를 게을리하고 지원금을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장 및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훈령 제311호

청양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청양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청양군 공무국외출장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를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공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행 기타”를 “수행,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여비는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

례」에 의거하여"를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여비는「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여행계획 사전협의)"를 "(출장계획 사전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공무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여행에 참가하거나 해외"를 "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국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허가"를 "공무국외출장허가"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구성 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 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상급기관 포함)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와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심사는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7조제1호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행목적지"를 "출장 목적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계약 또는 용역비에 의한 출장은 계약 또는 용역 내용과 출장목적이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실과"를 "실·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부서 심사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9조의 제목 "(여행의 필요성 심사)"를 "(출장의 필요성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여행"을 "경우에는 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여행 목적지 심사)"를 "(출장 목적지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목적지"를 "출장 목적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국"을 "출장국"으로,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목적지"를 "출장 목적지"로, "여행제한 국가일 때에는 사전에 관계부처"를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처"로 한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지역 및 기관 여부

제10조의2의 제목 "(여행 안정성 심사)"를 "(출장 안정성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방문예정국"을 "방문 예정국"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각각 “공무국외출장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여행자 심사)”를 “(출장자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행목적”을 “출장목적”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인원은 필요한 최소인원”을 “출장인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여행기간 및 시기 심사)”를 “(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여행기간은 여행목적”을 “출장기간은 출장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시기는 여행목적”을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공무국외여행의 제한)”을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을 “사람은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문책,”을 “직위해제, 징계처분, 문책 또는”으로, “처분일로”를 “처분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2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14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전 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자”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관련자료와 별지 제4호 서식”을 “관련 자료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여행”을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허가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대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table>
<tr><td>출장목적</td><td colspan="6"></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6">20 . . . ~ 20 . . .(일간)</td></tr>
<tr><td>출 장 국</td><td colspan="6"></td></tr>
<tr><td>방문기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11">출 장 자</td><td rowspan="2">소 속</td><td rowspan="2">직 급</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연령</td><td colspan="2">출 장 경 비(천원)</td></tr>
<tr><td>금 액</td><td>부담기관</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 . ~ 20 . . . 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항상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출장기간 중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상 기득한 기밀은 물론 직장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해외출장기간중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으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와 제 규정을 출장기간중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해외통신망은 주변국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도청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국가이익과 관련된 내용의 소통시에는 반드시 외교통합 통신망을 이용 하겠으며, 통신내용의 사전 보안성을 철저히 검토 후 소통하는 등 통신보안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외교통합 통신망 이용요령
   국내 → 해외: 외교통상부에 의뢰
   해외 → 국내: 해외공관에 접수

3.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로 알고 아래 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나. 군형법 제14조 및 제80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 및 제9조

20 . .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안 건 명				
세 부 내 용	대 상 자			
	기 간			
	출 장 지			
	출 장 경 비		출장경비지원 사전협의여부	
	주 관			
공무국외출장 내 역 (최근 3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청양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 군 수

부 위 원 장 행 정 지 원 과 장

위 원 기 획 감 사 실 장

위 원 주 민 복 지 실 장

위 원 문화체육관광과장

간 사 서 무 팀 장

감 사 팀 장

위 정본임.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의자료

1. 건 명:

2. 공무국외출장 신청자

○ 신청자:

출장국가	출장주관	출장기간	연수경비	징계내용	비고

3. 연수계획 주요내용

○ 연수계획 수립 근거 및 주관

- 연수근거:
- 연수주관:

○ 연수지역:

○ 연수주요내용

-

4. 공무국외출장심사 검토사항

○ 출장의 필요성:

○ 출장 목적지의 타당성:

○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출장의 안전성:

※ 주관기관 출장계획 공문 첨부

※ 항공운임증, 열차운임료, 출장자보험료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이름	직급	생년월일	방문내용	방문지	출장일자	출장비용	근무부서	집행기관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1월 21일

청양군 예규 제312호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인・허가”를 각각 “인가・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의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를 “제10조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로 한다.

2.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두도록하며”를 “두도록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진・출입”을 “진입로・출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용・배수”를 “용수로・배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토사 반.출입 계획)”을 “(토사 반입 및 반출 계획)”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미이행시”를 “미이행 시”로, “부과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